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외 23명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김민성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의원(24명)

1. 제안이유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온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가업승계인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가업승계업체 지정 및 가업승계 지원, 지정취소(안 제5조~제7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 등(안 제8조~제14조)
- 라.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안 제1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 4)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부서검토: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향토장수소상공인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장수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장수소상공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서 동일업종으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온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란 동일업종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일업종”이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의 업종을 말한다.
5. “대대손손가(代代孫孫家)”란 가업승계를 완료한 향토장수소상공인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거쳐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향토장수소상공인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가업승계인의 책무) 향토장수소상공인 가업승계인은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대손손가 지정) ① 친족에게 가업승계를 완료한 향토장수소상공인이 대대손손가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대대손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미시 대대손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대손손가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업종제한 및 지정기준 등 대대손손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대대손손가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대대손손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부착
2.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3.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4. 포장 및 디지털 결제 등 경영현대화
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6.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7. 업체 대표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른 동일한 특례보증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대대손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대대손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대손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대대손손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대손손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가업승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며, 대대손손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가업승계지원센터) ① 시장은 향토장수소상공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업무는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경영혁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대손손가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대손손가(代代孫孫家)』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업 력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업 체 주 소					
	업체 연락처					
	가업승계 여부	* 승계 전 대표자와의 관계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e-mail	@	
경영 환경	매출실적	최근 3년간(백만원) (①_____, ②_____, ③_____)				
	고용증감	최근 2년간(명) (_____ → _____)				
보유 역량	자격증/특허/ 해당분야 수상/ 입상 경력	_____개 (①_____, ②_____, ③_____)				
	교육 및 훈련 참여 (중기부, 고용부, 지자체 등)	☐ 예 ☐ 아니오		회계관리 프로그램 보유/ 안전시설 구비	☐ 예 ☐ 아니오	

※ 대대손손가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 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 아니오 ☐
- ②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 아니오 ☐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된 대대손손가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_____ (서명)

구미시장 귀하

대대손손가 역랑기술서

기술
사항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9. (생략)

10.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3. (생략)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생략)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차. (생략)
- 3~7.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조 례 명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조례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가업승계인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가업승계업체 지정 및 가업승계 지원, 지정취소(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 등(안 제8조~제14조) ○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안 제15조) □ 검토 결과 ○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소상공인 가업승계 활성화로 지역경제안정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정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 2028
-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정 사업비 (예상 지정 개소/년 : 5건)
- 대대손손가 지정 사업장 지원 보조금 (5개소 × 2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보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계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합 계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김혜영(☎054-480-262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2024년) : 110,000천원
 - 사업비 및 운영비(지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 가업승계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 : 100,000천원
(지원 5개소 × 20,000천원)